

## OECD 규제정책위 정기회의 참석 및 영국 규제개혁기관 면담을 위한 출장

2022. 12. 03. - 12. 10.



### 1 배경 및 목적

#### 1) OECD 규제정책위 정기회의 참석

- OECD Regulatory Policy Committee(이하 RPC)는 12월 5일, 6일 양일간 제27차 회의를 개최
  - RPC 심포지엄에서 OECD Regulatory Policy 2.0 Agenda의 일환으로 규제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민주적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에 광범위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논의
    - 제1회 OECD 2021 공공기관 신뢰조사결과 및 시사점 논의
  - 규제정책 전망 및 진행중인 관련 프로젝트 정보 공유
    - 정부차원의 규제정책 육성과제와 RPC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OECD RPC/Network of Economic Regulator(이하 NER) 공동으로 운영하는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안건 및 NER의 동향 보고
    -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OECD 권고안 이행을 위한 RPC의 역할과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이하 IRC) 정책 및 동향: 규제영향평가(RIA)를 통한 국내법 제정과정에서의 IRC, 양국간 IRC(프랑스-독일), 지역(APEC, 북유럽, 태평양동맹) 및 다자간 IRC
- KDI 규제연구센터는 해당 행사 참석을 통해 각국의 최근 규제제도 동향 및 성과를 살펴보고 국내 규제제도의 개선 및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2) 영국의 규제개혁 기관 면담

- 영국의 Better Regulation Executive(BRE)는 BEIS 내에 설치된 규제개혁 총괄기관이며, 영국의 규제개혁 전 부처에 걸쳐 규제개선 정책과 관련된 자문과 조연을 제공하고 있음.
  - 2018년 영국 출장 시 해당 기관 및 BRE 내에서 IA의 검증을 담당하는 RPC 사무국과 면담을 수행함.
  - 2019년 2월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 전반을 다루는 세미나를 RPC와

한국에서 공동 개최하였고, 2019년 3월 BRE가 한국을 방문하여 2차면담을 진행

- 2019년 12월 영국 BRE를 방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한 규제 방향성에 대한 면담 진행
  - BRE의 적절한 규제방향에 대한 지향점 및 운영제도(RHC, RPF) 공유
- KDI 규제연구센터는 영국의 BRE 및 RPC와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자 함.
- 규제비용감축제(One-In, One·Two·Three-Out), 기업영향분석(Business Impact Target)
- 사후규제영향평가(Post Implementation Reviews) 제도 및 운영 현황

## 2 출장 개요

- 예 산: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 기 간: 2022년 12월 3일(토) ~ 10일(토), 입출국일 포함
- 출장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 출장자: 총 1명

	이름	소속 및 직함
1	형준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 전문연구원

## 3 세부 일정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2.3 (토)	10:45~17:00	출국(인천→파리)	· OZ501
12.4 (일)	10:00~12:00	관계기관 사전회의	· 참석자: 김윤경 규제총괄정책관 과장 외 국무조정실 3인,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팀장,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2.5 (월)	전일	OECD 규제정책위 정기회의	· 장소: OECD 컨퍼런스 센터
12.6 (화)	전일	OECD 규제정책위 정기회의	· 장소: OECD 컨퍼런스 센터
12.7 (수)	16:10~16:35	이동(파리→런던)	· AF1280
12.8 (목)	13:00~16:00	영국 BRE 면담	· 장소: BRE · 참석자: 김윤경 규제총괄정책관 과장 외 국무조정실 3인,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팀장, Sarah Montgomery, Deputy Director of Policy and Delivery, 외 BRE 4인
12.9 (금)	10:00~12:00	영국 RPC 면담	· 장소: RPC · 참석자: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팀장, Andrew Hallett, Senior Policy Advisor, RPC
	20:10~17:45 <sup>(+1)</sup>	이동(런던→인천)	· OZ522

## 4 주요 논의내용

### ▲ 1. 프랑스 OECD 규제정책위(RPC) 정기회의 참석

- 개요
  - 일시: 12월 5일(월) ~ 6일(화) 09:30~18:00
  - 장소: OECD 컨퍼런스룸

- 참석: 각국 규제기관,
  - 이영기 기획조정실장, 최한창 환경규제 현장대응 TF팀장(이상 환경부)
  - 김윤경 규제총괄정책관 과장, 김진실 사무관, 공도연 사무관, 오민준 사무관(이상 국무조정실),
  - 서성아 비용분석평가팀장(이상 한국행정연구원),
  - 형준 전문연구원(이상 한국개발연구원)

□ 주요 내용

가. RPC 심포지엄: 결과를 위한 규제(Regulating for results)

- 국제적 복합위기 해결을 위한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특히 기후·환경위기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규제 전환이 필요(4세션)
- 세션1: 자산으로서의 규제(Regulating as assets)
  - 규제를 자산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자산관리와 마찬가지로 규제도 시스템적 차원에서 전 과정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며, 민간 혁신, 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규제가 요구됨.
    - (Graham Russel, 영국 제품안전·기준사무소 대표) 규제의 안전성(stability) 과 신속성(agility)이 모두 필요하며, 양자 간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의 활용을 강조
    - (Mark Steel, 뉴질랜드 산업혁신부 규제시스템 과장) 뉴질랜드의 사례를 들어 자산관리의 관점에서 규제관리의 필요성과 규제 사이클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관리(regulatory stewardship)를 강조하는 한편, 좋은 규제관리의 요소로 규제환경 조사, 성과평가, 이해관계자 피드백, 운영지식(operational intelligence)을 언급
    - (Lorenzo Allio, 컨설턴트)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등의 녹색목표를 위해서는 혁신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부분의 투자와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중요
    - (토론) 데이터를 활용한 규제개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
- 세션2: 규제와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

-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이유와 규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Monica Brezzi, OECD 거버넌스지표·성과평가과장) 정부 신뢰에 대한 핵심요소와 공공부문의 신뢰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 정부를 신뢰하는 비율보다 정부가 시민의 의견에 대해 반응한다는 비율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시민에 대한 피드백이 정부 신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정부 신뢰에 영향이 크고 만족도도 높은 요소는 '미래 위기에 대한 준비'이며, '시민 의견에 대한 반응성'은 만족도는 낮으나 영향이 큰 요소임을 언급
  - (Hilary Sutcliffe, 사회기술디렉터·Allan Lind, 듀크대 명예교수) 지정토론을 통해 신뢰가 규제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신뢰가 중요하며 특히 신뢰에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포용성(inclusion)이 핵심임을 강조
    - 시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시민들은 정책결정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meaningful engagement)했다고 인식한다며, 협력적 과정이 결과 중심의 규제로 이행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
  - (토론) EU 등은 신뢰를 위한 참여유도에 매우 많은 자원이 소요되며 EU의 경우 너무 많은 협의로 인한 피로도가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는 한편, 선거 등으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움을 지적

□ 세션3: 결과를 위한 규제(regulating for outcomes)

- 리투아니아,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각국의 규제기관이 어떻게 초점을 맞춘 구조로 변화했으며 어떤 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
- (Mylaine Des Rosiers, 캐나다 규제혁신정책청 과장)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혁신성을 높이고 규제의 총 누적 영향(cumulative impact)을 분석하여 공급망에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선 전략(Regulation Modernization Strategy)을 소개
  - 기존 공공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한편, 규제의 총 누적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여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급망 재편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음.

- (Jan van Tol, 네덜란드 에너지전환 조정관) 네덜란드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 전환과 함께 관련 안전 문제를 관찰하도록 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안전·건강 위험을 고려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연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범정부 정책원칙(Policy Principles)을 마련한 사례를 발표
  - 동 정책원칙에는 에너지 전환의 위험을 고려하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규제실험의 영역을 확장
  - 기존 규제가 에너지 전환의 장애가 될 경우 범정부적 해결책을 신속히 찾으려 하며 맥락에 대한 명확하고 솔직한 기반 위에 위험의 정도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레벨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제시
- (Penjani Mkambula, 영양증진국제연합(GAIN)) 공급망에서 직접 데이터를 받고 영양증진과 식품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소개

□ 세션4: 미래를 위한 규제(regulating for future)

- 한국의 규제혁신사례 및 한국-OECD 공동보고서 주요내용 발표
-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민간 혁신,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과 시사점을 공유
  - △유·위해성에 따른 차등적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구축, △자원순환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혁신유도형 재활용 규제 전환,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도입 및 스코핑 활성화를 통한 위험비례 규제로의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우선 추진 등의 사례를 설명
  - 동 규제혁신 경험을 통한 시사점으로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기업이 녹색전환의 파트너로 재정립되었으며, △민간 혁신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으로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제고한다는 원칙을 통해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세련된 규제설계와 △위험비례형 규제를 통한 '예방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제시
- (Yola Thuerer, OECD 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한국-OECD 공동보고서를 발표하며 녹색전환을 위해 새로운 시각(green lens)을 가져야 함을 강조
  - 녹색전환을 위한 규제의 요소로 △규제 도입시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반

- 영, △시스템적이고 체계적 사후적(ex-post) 규제검토,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위험비례형 규제와 실질적 위험평가를 통한 규제집행력 제고, △국제협력, △경제규제기관과의 조정 등을 강조
- 민간혁신·경제발전과 녹색전환 등의 환경정책 간 상충(trade-off) 관계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반드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녹색전환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바뀌었음을 언급
- 그간 규제영향평가가 경제·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추후 환경 영향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OECD가 녹색전환을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된 추가 연구를 새로운 작업계획(new work scheme)을 통해 반영할 예정

나. 정부 차원의 규제정책 추진과제

□ 패널 발표

- 국가의 정부구성 방식에 따라 연방형/단일형 국가로 분류할 수 있으나, 모두 규제일관성 확보 과제를 지님
  - 시민과 기업은 국가의 정부구성 위계(연방, 주, 지방, 국가 등)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형태의 규제를 단일한 규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시민 및 기업의 인식과 별개로 정부구성 유형에 따른 지방분권화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각 국가별 제한된 자원의 차이 및 특성에 기인한 문제도 제각각 발생함.
  - 각국의 현황 및 규제의 일관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접근방식 사례를 공유
- 호주(Paul Hubbard, Assistant Secretary, Cross-Jurisdictional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Reform Division, Department of Finance, Australia)
  - 호주의 규제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운영 사례(Automatic Mutual Recognition of Occupational Licences(AMR)): 주마다 직업면허를 따로 인정받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 했으나, 서로 다른 주 간의 직업면허를 자동으로 상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업면허제도를 개선. 일부 직업의 제한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중
- 네덜란드(Suzanne van Melis, Strategic Legal Advisor/Deputy Head, Legal Affairs and Regulatory Policy, Ministry of Justice and Security, The Netherlands)

- 규제부담자문위원회(Adviescollege toetsing regeldruk, ATR): 규제부담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방 및 지방 정부에 규제 관련 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법 및 규제의 비규제적 규제 부담에 대한 시민과 이익 단체로부터 의견(signal)을 수렴하여 지방정부에 제공함.
  - Europa decentraal: EU법, 정책에 대한 전문센터로 EU법과 정책의 도입 및 적용과정에서 지방, 자치단체 및 지역기구에 정보와 도움을 제공
- 멕시코(Giovanna Bacelis, Vice minister of Innovation, Better Regulation and Institutional Efficiency, Government of the State of Yucatan, Mexico)
- Better regulation pocily의 일환으로 규제환경의 디지털화 추진: △규제등록, △규제개선프로그램, △규제영향분석, △디지털투자창구개설, △사업허가를 위한 윈스톱 샵 제도 등 규제의 디지털화를 통해 각종 규제절차의 모니터링하고 법적 확실성 및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 참가자 토론

- (스페인) 멕시코의 사례와 같이 디지털화, 온라인화를 통해 시민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공감을 포함.
- 스페인은 지방분권화가 강하게 이뤄진 상태로 총 4위계의 규제가 있는데, 시민들이 규제가 어느 위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법률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음(ex. 의료서비스가 지역마다 달라서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모르는 경우).
  - 지방정부차원에서는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가능한 단순화(simplify, decoplexity)하고 디지털화(digitalize)하는 것이 필요함.
- (우크라이나) 규제정책 현황(Oleksil Kucher, Head of the State Regulatory Service, Ukraine)
- 전쟁상황 규제정책: 전쟁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기업과 정부의 관계 설정
  - 정부규제 철폐, 완화(Deregulate): 과도한 기업규제를 철폐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규제 초안에 대한 승인 거부 등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단순화 작업을 거침. △10000개 가량의 규제 중 37% 철폐, △기업대상 473.7백만 유로, △주 대상 7.5백만 유로의 규제비용 절감

- 규제정책의 원칙(규제초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고 기업 및 공공 이해관계자 대상 협의)은 준수하고, 규제당국(regulator)과 규제정책 시행기관 간 독립성을 유지하여 기업-국가간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
-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규제 시스템(온라인 플랫폼 등)구축과 관련하여 OECD 회원국들의 경험 공유 및 지원 요청

다. 2023/24 iREG 데이터 수집 및 2025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준비

- 의제4에서는 3년 마다 수행되는 OECD RPC의 주요 업무인 iREG 데이터 수집 및 2025 규제정책전망 구상안(concept note)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짐.
- (Paul Davidson OECD 규제정책과 선임연구원) 차기 iREG 데이터 수집은 2023~24년 중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주요 내용 및 일정표를 아래 언급
- 추세 분석(history, track change)을 위해 지난 iREG 지표 구성요소인 '이해관계자,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및 동 구성 하 설문문항 대부분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할 예정
  - iREG 설문조사에 응하는 각국 담당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설문문항을 기준으로 188개의 질문을 삭제했으며, 113개 질문은 2023년에는 질의하지 않을 예정(hidden)인바, 이를 통해 대략 300개의 질문 문항 수 감축 달성 / 각국 담당자에 대한 설문 응답 관련 교육훈련도 실시 예정
  - 또한, 시범적(pilot)으로 신규 iREG 설문문항 26개를 신설한바, △환경 관련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goes green) △검사 및 집행(Inspections and Enforcement) △민첩한 규제정책(Agile Regulatory Policy)에 관한 설문
  - 상기 신규 iREG 설문문항은 규제정책위의 그간 권고안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것으로, 기존 설문문항과 달리 각국 규제정책평가 순위(countries' composite score)에는 미반영 예정인바, 많은 참여 당부
  - 향후 일정
    - (23.4월~여름경) 설문문항 송부 및 각국 규제당국 답변, 답변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23.9월~24.3월) 설문답변 분석 및 규제정책전망 초안 작성
    - (24.4월~12월) 4월 RPC 정기회의에서 규제정책전망 초안 논의, 여름 중 최종안 각국 회람, 11월 RPC 정기회의에서 규제정책전망 승인

o (Christiane Arndt-Bascle 규제성과측정팀장) 차기 규제정책전망 발간을 위한 구성안을 소개함.

- 목차

- 1장 : 사람을 위한 규제(Regulating for People)
- 2장 : 지구를 위한 규제(Regulating for the planet)
- 3장 : 미래를 위한 규제(Regulating for the future)
- 4장 : 더 효과적인 규제(Regulating more effectively)
- 5장 : OECD 회원국 내 규제(Regulation in OECD countries)

- 금번에는 MRP SG(Measuring Regulatory Policy Steering Group) 내 긴밀한 토론을 통해 기존 목차와 달리 테마별로 구성된 목차안을 마련

- 동 구성안에 대해 12.15까지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접수하고자 하며, 희망하는 국가는 언제든지 MRP SG에 참여하여 의견 개진 가능

o (주요 의견) 캐나다는 새 구성안이 무엇(what)/어떻게(how)를 설명하기 어려운 목차일 수 있다는 지적 및 MRP SG 내에서 환경 부분이 단독 목차로 있는 점이 다소 불균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함.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EU 등은 새 구성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함.

## 라. 위원회 운영 및 각국 발표

□ 제3기 RPC 심층평가(In-Depth Evaluation) 결과

o (Janos Bertok OECD 공공거버넌스국 부국장) 제3기(2019~) RPC 심층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분야별 평가 결과 : △관련성(relevance) : 중~상 △효과성(effectiveness) : 중~상 △위원회 산출물의 질(quality of committee products) : 상~최상 △위원회 기능(committee functioning) : 매우 만족

- 권고 사항 :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목표와 관련성 있는 업무 수행 △표준 설정 및 동 표준을 위원회 업무에 반영하는 전략적 고려 필요 △참석자 안내서(delegate handbook) 업데이트 등

- 향후 절차 : 상기 권고안 이행을 위한 RPC 액션플랜 수립(23.1월) → 평가위원회 검토(23.2월) → 액션플랜 이행진전 검토(23.10월) → 이사회(Council) 및 RPC 의장 대화(24.1월 이후)

□ 경제규제위원회(NER) 활동 보고

o (Anne Yvrande-Billon NER 의장) 12.7(수) 만나질 일정으로 NER 정기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바, 동 회의에서는 △녹색 통치(governing green), 환경적 지속가능성 △위기 상황 발생시 규제자들의 대응 방식 △2023년 OECD 섹터별 규제 거버넌스 지표(Indicators on the Governance of Sector Regulators)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소개함.

□ 각국 규제정책 발표

o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중임에도 불구, 규제 완화·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크라이나의 규제정책 체계를 설명하고, 규제자를 감독하는 별도 기관이 존재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규제 환경의 강점이라고 한 후 아래 언급함.

- 우크라이나의 전략 목표 : △기업과 당국이 이해의 균형 유지 △규제정책 전반에 디지털화를 도입

- OECD에의 요청 : △OECD 가입을 위한 전단계로서 RPC 준회원국 지위 부여 △우크라이나 규제정책 검토를 통한 우크라이나 규제체계 개선

o (UAE) 아부다비 정부가 도입한 최신 규제정책 및 향후 정책 과제로서 규제평가 수단(tool kit)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자국 사례를 소개함.

## 마.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규제협력 권고안

o (Marianna Karttunen OECD 규제정책 정책자문) 국제규제협력에 관한 권고(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IRC)안은 지난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마련됨. 이 과정에서 회원국간 서로 다른 규제프레임워크간 일관성 확보방안에 대한 상호간의 경험 교환을 통해 세부 단계를 설계 추진

- 국제규제협력(IRC) 권고안은 2022년 6월 OECD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3가지 기본권고영역을 설정하여 세부 실무원칙 마련을 위한 작업이 수행중

- ① 전체정부 차원의 접근방식을 통해 국제 규제 협력(IRC) 촉진 및 이행
  - 거버넌스 구조 또는 협력을 중심으로 한 정부 당국 간의 조정을 통해 IRC에 대한 전체 정부 접근 방식을 채택
- ② 국내 법규 제정을 통해 국제규제협력(IRC) 인식

- 국내법 제정 내에서 국제적 고려사항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규제 기관 전체 차원에서 규제 관리 도구 전반에 걸친 규제 프로세스 중 규제 기관이 국제적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학습 추진
- ③ 양자적, 복수적(plurilaterally), 다자적(multilaterally) 국제 협력
  -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있어서 모범관행 및 혁신 관련 국가간 상호학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규제관리 역량개발 및 다양한 국제영역을 포괄하는 협력에 있어서 일관성 확보
  - 일부 국가들의 경우 규제를 만들고 규제영향분석에서 근거를 찾는 초기 단계에서 계층 구조적 고려사항 검토를 수행하는 한편, 국제규제협력(IRC) 차원의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국경을 초월한 규제의 영향을 이미 측정하고 있음.

- o (Andrea Barios Villaea) 국제기구 차원에서 국제 규제 협력과 국제표준이 정하는 규칙관련 규정과 표준의 일관성, 차이점 및 지식에 대한 이해 필요
  - 규제와 국제표준은 둘 다 좋은 정책 결정 관행에 따라 개발되어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해관계자 참여를 중시
  - 장기적 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규제는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세부 해결책보다는 해당 정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로 다루며, 여기에 국제표준의 역할이 존재
- o (Caroline Nicholas 수석법률고문) 국제규제협력(IRC)은 이해관계자 참여와 국제규제협력간 연계를 통해 국제적 지식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해결책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접근가능성 제공
  - 국제 모라토리오 운영 위원회의 권고안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지원 방안으로 국제적 지식과 전문성을 고려한 규제적 해결책 마련을 제안
  - 일례로 ISO 표준의 경우, 전문 분야가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하여 개발 수행. 구체적으로 제반 규정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학계·산업·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 ISO 표준은 자발적인 국제표준이 개발되는 곳과 국내 입법표준 또는 규정사이에 통합될 수 있는 자발적인 도구를 중심으로 규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좋은 사례로서 표준 설정 프로세스는 시장 주도적 특성을 보임
  -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국제규제협력(IRC)을 통해 국제적인 전문지식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공

- o (호주 대표) 국제규제협력을 위해서는 신뢰기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호주에서 운영중인 국제표준 및 참여팀의 규제준수 지도작성 과정에서 국제조하 적용중인 사례 소개
- o (칠레 대표) 칠레 내부적으로 국제규범 조화사례를 소개하고 국제규제협력 적용의 어려움과 추가적인 연구 필요 제시
- o (캐나다 대표) 캐나다의 국제규제협력 사항을 무역협정 내 포함하려는 노력들을 설명하고 향후 국제규제협력은 양자적이기보다는 다중적인 복잡한 상황이 될 것임을 제시

## ▲ 2. 영국 규제개선국(BRE) 먼담

### □ 개요

- 일시: 12월 8일(목) 13:00 ~ 16:00
- 장소: 영국 규제개선국(BRE) 회의실, 1 Victoria St. London.
- 참석: Sarah Montgomery, Khalick Zaineب 외 3인(이상 BRE), 김윤경 규제총괄정책관 과장, 김진실 사무관, 공도연 사무관, 오민준 사무관(이상 국무조정실), 서성아 비용분석평가팀장(이상 한국행정연구원), 형준 전문연구원(이상 한국개발연구원)

### □ 주요 내용

- o 영국 BRE와 최근 영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신산업 관련 규제방향성에 대하여 논의
  - BRF(The Better Regulation Framework)는 규제개혁의 중심으로 영국 규제당국의 정책이 구체적인 규칙으로 전환되는 근간을 의미함.
  - 모든 민간영역활동을 포함하며, 공공분야(형사, 처벌 등)나 규제 외적 정책수단(조세, 정부지출 등)은 BRF의 범위에서 배제함.
  - 브렉시트 이후, 정부규제완화와 관련한 공식 컨설팅 결과물 보고서 (Benefit of Brexit, 22. 01. 31.)를 발간
  - 4가지 주요 변화점
    - 기존 비례성(proportionality)원칙을 강화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 도입

- 규제가 아닌 대안적 방식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
  - 규제평가 강화(규제 집행 후 실적 측정)
  - 규제의 사회 전반적 영향 측정활동 개선
- o 영국에서는 더 이상 규제비용관리제(One-in-X-Out)를 운영하지는 않음.
- 도입 이후 단발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반면 부작용이 두드러졌고, 실제로 규제를 폐지하고 다시 도입한 사례도 발생함.
  - 5년 동안 OIXO 실시 후 기업의 순비용(business net cost) 측정 결과 초기에는 22억 파운드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고, 이후 100억 파운드의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66억 파운드 절감만 달성하는 등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함.
  - 다만 이는 영국의 규제개혁의 대안적 방식 우선 원칙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규제가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OIXO 폐지로 인하여 최근에는 기업순비용이 78억 파운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도입 논의는 있었으나, 기업들은 재도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됨.
- o 친혁신규제활동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정밀화하고 있으며 4차산업 촉진을 위한 백서(2019)를 통해 영국의 혁신산업 비전 국가전략을 발표
- 친혁신규제 관련 샌드박스, 이노베이션허브, 규제기관을 위한 규제기관 선도기금(Regulator's Pioneer Fund, RPF) 운영
  - 기술혁신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영국표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e)과 공동으로 특정 기술에 대한 필요를 대비한 사전대응행동체계 구축
  - FREN(Freeport Regulation Engagement Network): 다양한 기관과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규제현황을 공유하고 협의결과를 근거로 샌드박스나 기타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
  - 국제협력으로 파트너 국가들과 혁신기술관련 규제협력을 강화
- o 규제개혁 선도기금(Regulator's Pioneer Fund, RPF)
- 규제기관과 지방정부 주도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BRE가 투자
    - 최근 3번째 펀딩을 마치고, 향후 1,200백만 파운드 지원프로젝트 선정
  -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운영되며, 실제 규제기관 및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방법(샌드박스, 디지털트윈, 전담자문도입 등)으로 지원됨.

- RPF는 독립평가를 기반으로 매 펀딩 라운드마다 평가를 진행하며, 'regulator's innovation network'를 통해 규제기관간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
- o 미래규제대비위원회(Regulatory Horizon Council, RHC)
- 독립전문자문기구로서 영국이 기술혁신을 통해 가장 큰 효율을 얻기 위한 규제의 개혁방향을 자문
    - 법조문 외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제환경을 검토
    - 현 상황을 개선하고, 단순 성장지향적 보다는 올바른 환경을 목표로 함.
    - 경제적 가치 외 사회적, 환경적 가치도 고려
    - 산업의 수직적, 수평적(전방위적) 전개방향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요소를 예측하고 규제활동을 통한 종합적인 성공을 촉진
  - Deep Dive(심도있는 연구결합을 통한 전문성 확보) 등 다양한 툴 사용
    - 미래전망활동(horizon scanning)으로 어느 분야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장 큰 효율이 있을지 파악
    - 여러 정부부처의 전망활동과 규제개선관점을 결합하여 분야 선정
  - 위원회와 정부의 협력활동(Closing the Gap)의 일환으로, 영국의 강화된 비례성(proportionality)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부처들이 어떤 툴과 기법을 활용해야 하는지 6개의 상세 권고안을 영국정부에 제출

### ▲ 3.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PC) 면담

#### □ 개요

- 일시: 12월 9일(금) 10:00 ~ 12:00
- 장소: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PC)
- 참석: Andrew Hallett, Senior Policy Advisor(RPC),  
서성아 비용분석평가팀장(이상 한국행정연구원),  
형준 전문연구원(이상 한국개발연구원)

#### □ 주요 내용

- o 영국 RPC와 최근 영국의 사후영향평가(PIRs) 근황 및 제도운영 실무에 대하여 논의
  - RPC는 규제안에 대한 모든 부처의 영향평가서(IAs)에 제시된 증거 및 분

- 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이는 KDI 규제연구센터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성격이 유사함.
  - 다만 규제연구센터와는 달리 영국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며, 독립적인 기관(independent verification body)으로 위원 8명으로 구성
  - 증거기반 분석을 통해 외부 감시를 견딜 수 있는 규제정책, 민간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만드는 활동을 지원함.
- 영국의 규제정책 수립과정은 3단계로 구성되며, 이 중 마지막 단계에서 규제 시행 후 사후영향평가(PIRs)를 수행
- [Red]사전 협의(Pre-consultation): 규제/정책 제안을 처음 작성하는 단계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일차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함. 정부 부처 내부/부처 간 협의 및 공공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초안의 성격을 지닌 영향평가 결과(initial impact assessment)가 RPC의 검토를 걸쳐 공개
  - [Green]규제 시행 전(Pre-implementation): 정부 부처 내부/부처 간 협의 및 공공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영향평가(IAs)를 수정하고 RPC의 검토를 거친 결과를 발표하여 규제공포를 준비
    - 연간균등순비용 500만 파운드를 기준(threshold)으로 신규 규제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 여부를 판단
    -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정책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영향평가 수행 가능
    - 반대로 연간균등순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정책적 이유(policy reason), △비례성원칙(proportionality), △기존 영향평가계획의 존재(existing review plan), △기타 사유(other)에 따라 수행에서 제외
  - [Blue]규제 시행 후(post-Implementation Review): 해당 규제가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하며, 개별 부처가 분석한 사후영향평가(PIRs) 결과도 RPC의 검토를 거쳐 공개
    - 템플릿을 통해 사후평가요소 및 고려항목들을 제시: 규제 집행 기간 내 데이터 수집이 원활하게 되었는가를 살피고, 해당규제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
- 기존 영향평가(IAs) 및 사후영향평가(PIRs) 검증의견의 세부사항을 유지하면서 주요 의견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RPC 검증의견 형식을 개정
- 연간균등순비용(equivalent annual net direct cost to business, EANDCB) 및 중소기업영향평가(small and micro business impact assessment, SaMBA)등 분야에서 등급을 측정하여 검증의견 제시

- Green("fit for purpose"): IA(또는 다른 분석)가 목적에 적합하며, 품질에 대한 큰 문제가 없거나 부처에서 보완이 가능한 수준인 경우
  - Red("not fit for purpose"): IA(또는 다른 분석)가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 분석과 분석의 근거 수준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식적 평가등급을 측정하지 않는 분야('rational and options', 'cost-benefit analysis', 'wider impact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등)에서는 분석의 품질과 그 증거의 수준에 대한 품질지표(quality indicator) 제공
    - Good/Satisfactory/Weak/Very weak
- 사후영향평가(PIRs)는 영국의 정책개발사이클(policy development cycle)에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
- ROAMEF: 규제배경(Rationale), 달성목표(Objective), 대안평가(Appraisal), 모니터링(Monitoring), 평가(Evaluation), 피드백(Feedback) 이 순환되는 구조이며, 이 종합과정을 통해 규제의 유지 및 변경여부를 결정함.
  - RPC는 규제시행 후 최소 5년 내에 사후영향평가(PIRs)를 수행하여야 하며, 규제에 재검토주기가 정해져있는 경우 그 재검토주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
  - 다만 대부분 주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번 사후영향평가 수행 후 동일 주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 실시
  -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에 따라 그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후영향평가(PIRs)는 수행하지 않으며, 다만 특정 규제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RPC가 사후영향평가(PIRs)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의견으로 제출 가능
    - 「SBEE 2015」 제31조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가이드에서 '예외적으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qualifying exception)'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사후평가가 강제됨을 의미하지 않음.
    - 여전히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규제라 하더라도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후영향평가(PIRs)를 수행